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19가단1548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피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천 담당변호사 구태형, 권오천

2. C

변론 종결2021. 9. 10.

판결 선고2021. 12.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D과 피고 B 사이에 2017. 7. 20.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115,002,52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115,002,5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115,002,5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

1) E은 2011. 1.경부터 F시장에서 침구류 등 판매업을 하는 상인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원고와 D은 E이 조직한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이 사건 계는 2017. 7. 8.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나, E이 2017. 7. 10.경 연락을 끊고 도주함에 따라 파계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원들의 위임을 받아 파계 전 계금을 수령한 D을 상대로 미지급 계불입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산금 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22572호, 같은 법원 2017가단22589호, 같은 법원 2017가합1848호로 각 제기하였다. ① 위 2017가단22572호 사건에서 법원은 2019. 11. 5. 'D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9.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② 위 2017가단22589호 사건에서 법원은 2019. 12. 13. 'D은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2019. 1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③ 위 2017가합1848호 사건에서 법원은 2019. 5. 2. 'D은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19. 1.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D은 피고 C와 오랫동안 금전거래를 하여왔는데, 아래 다.항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금 140,000,000원(약정 이율 월 2%)이었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 1) 피고 C은 2017. 7. 15. D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7. 2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이 사건 매매대금은, ① 140,000,000원은 D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으로 지급을 갈음하고, ② 나머지 120,000,000원은 피고 B이 2017. 7. 17. 100,000,000원, 2017. 7. 26. 2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H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20,000,000원, 채무자 C)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7. 7. 18.경 H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무를, 2017. 7. 26.경 주식회사 G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무를 각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D의 자산상태

D은 2020. 9. 21. 원고의 신청에 의한 재산명시기일에서 I은행 예금채권 3,433,999원, J은행 예금채권 981,468원 합계 4,415,467원만 재산목록에 기재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2, 1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 피고 B은 2017. 7. 15.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40,000,000원은 피고 B의 자금이 아닌 D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보아 피고 B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D과 피고 B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 위와 같이 D과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명의신탁약정은 D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출연하여 그 대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공동담보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 한편 매도인인 피고 C은 위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매도인 피고 C은 매수인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는데, D이 부담한 이 사건 매매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일부일 뿐이므로 원상회복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 그렇다면 D과 피고 B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은 원고의 채권액 115,002,526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가액배상으로 피고 C에게 위 115,002,5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D과 피고 B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64232(본소), 2017다264249(반소)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40,000,000원이 D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되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D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덧붙여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D은 피고 C에 대하여 140,000,000원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D은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C은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한 원고에게 115,002,5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채무자 D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함으로써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위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불행사의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조미옥

별지